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54호서식] <개정 2010.12.22>

보내는 사람:

받는 사람: 귀하

##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[ ]승인 [ ]불승인 통지서

주소:

문서번호			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					
국내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						
	상호 • 법인명		대표자					
	소재지							
성명	생년월일	파견국가명	파견 사업장 (공사)명	승인 여부	불승인 사유			

## ※ 이미 파견된 사람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접수일의 다음 날이며, 파견예정자의 경우 실제 출국일이 됨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※ 해외파견자가 파견이 종료되어 국내사업장으로 복귀되는 경우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년 월 일

## 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△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		검토자(직위/직급)	서명	결재권자(직위/	'직급)	서명	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							
시행	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						
우		/주소			/홈대	페이지주소	
전화(	)	/팩스( )	/담당 직	원의 전자우편 주소	/공기	개구분	